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 선고 2020가단2858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경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승백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변론 종결 2024. 9. 6.

판결 선고 2024. 11. 1.

주 문

1. 피고가 2020. 5. 7. 주식회사 C와 체결한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2020. 5.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피보전채권

가. 존부 및 범위

갑 2, 12, 15, 16, 17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피보전채권액은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1억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신의칙 가)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유지하였다.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연체 차임 채권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중대하므로 이에 대한 보전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신의칙에 반한다(수원지방법원 2017나77411 판결 6, 7쪽).

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7나77411 판결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르다.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다. 원고가 2020. 2. 3.까지 C로부터 차임을 받다가 그 이후 권리행사에 나아가게 된 과정에서 C의 2020. 6. 3.자 당좌거래정지의 사정을 알게 되고, 2020. 1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에 대한 권리행사를 장기간 동안 지나치게 소홀히 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담보채권의 범위 가) 주장

원고의 피보전채권 중 상당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연 25% 지연이자 규정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과다하므로 인정할 수 없거나 연 5% 상당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상인인 C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C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가 무자력 상태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사해행위

가. 별지2 목록 기재 동산 중 운전기 8도 1대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주식회사 D(이하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동산 중 운전기 8도 1대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주었으므로 이는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D와의 관계에서 C가 사실상 그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위 1대를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위 1대 역시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데(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C와의 관계에서 피고는 위 1대를 현실적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점유하였다고 보인다. 피고가 위 1대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동산

1) 갑 5, 8, 9, 14,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고, 피고는 그에 관하여 악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은 C의 유일한 자산이었다.

나)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로도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 중이었다.

다) C의 대표이사는 C의 채권자들의 집행 등을 고려하여 통정허위표시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실제로 2020. 5. 29. C에게 입금된 매매대금은 피고가 마련한 돈이 아니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의 매각 목적이 C의 D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고, 매각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D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부당한 염가에 해당하고, C가 피고 등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나아갔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2020. 5. 7.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앞서 본 피보전채권액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한웅희

별지